충주시의회 제156회 정례회
2011. 7. 1(금) 11:00

조례안 심사보고서

□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 례 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06.03	2011.06.03	2011.06.13	2011.06.13	세 정 과 장

2. 제안설명요지

□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그 공제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규정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되어 세액 공제범위를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규정에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범위에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000원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자동계좌이체 신청시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시 300원을 공제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주관 시·도담당자 회의시 시·도간 형평성 차원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PK

4. 질의·답변 요지

□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실제로 혜택이 갈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 작년부터 위텍스에 가입하게 하고 시골 노인분들에게 자동이체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질의 : 세액공제를 150원, 300원으로 최소한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300원에서 7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은가?

○답변 : 행안부 주관 시·도 연찬시 이 금액이 상담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한 사항임.

▶질의 : 시행이 되면 다른 시·도도 이렇게 정하는가?

○답변 : 그러함.

5. 심사결과

□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